

신한퇴직연금커버드콜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파생형]

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21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제21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① <생략>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<이하 생략>	제21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① <현행과 같음>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<이하 현행과 같음>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28조 (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)	제28조 (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]"이라 한다)을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<이하 생략>	제28조 (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]"이라 한다)을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<이하 현행과 같음>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30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	제30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<이하 생략>	제30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재무상태표 <이하 현행과 같음>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37조 (보수)	제37조 (보수) ① <생략>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<이하 생략>	제37조 (보수) ① <현행과 같음>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<이하 현행과 같음>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48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	제48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<생략>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<생략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신설>  <이하 생략>	제48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<현행과 같음>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<현행과 같음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 <이하 현행과 같음>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
- 3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- 4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사항	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사항 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]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1. 채권 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 <이하 생략> 3.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	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사항 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]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1. 채권 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 <이하 현행과 같음> 3.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

<p>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2부 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사항&lt;계속&gt;</p>	<p>신한커버드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 2. 채권 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채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<b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</b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 &lt;이하 생략&gt; 3.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b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</b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	<p>신한커버드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 2. 채권 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채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<b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b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 &lt;이하 현행과 같음&gt; 3.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b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b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
<p>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2부 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사항&lt;계속&gt;</p>	<p>제2부 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투자제한 [모투자신탁 투자제한]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- 동일종목 투자 &lt;생략&gt; <b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</b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「<b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b>」에 따른 <b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b>,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.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	<p>제2부 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투자제한 [모투자신탁 투자제한]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- 동일종목 투자 &lt;현행과 같음&gt; <b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b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(&lt;삭제&gt;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.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
<p>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2부 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사항&lt;계속&gt;</p>	<p>신한커버드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 - 동일종목 투자 &lt;생략&gt; <b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</b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(「<b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b>」에 따른 <b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b>,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.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	<p>신한커버드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 - 동일종목 투자 &lt;현행과 같음&gt; <b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b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(&lt;삭제&gt;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.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
<p>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</p>	<p>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b>대차대조표상</b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와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	<p>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b>재무상태표상</b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와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
<p>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<p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(www.shinhanfund.com) ·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&lt;신설&gt;</p>	<p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(www.shinhanfund.com) ·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b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b>)</p>
<p>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<b>최근현황경신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</b></p>	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<b>최근현황경신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</b></p>
<p>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: 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<p>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<p>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<b>최근현황경신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 및 2022년 06월 30일)</b></p>
<p>3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</p>	<p>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- <b>최근현황경신(기준일: 2022년 6월 30일)</b></p>

<b>4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</b> <b>업데이트 : 제4부 1. 집합투</b> <b>사업자에 관한 사항</b>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제5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- <b>최근 현황 갱신</b>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- <b>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</b> 라. 운용자산 규모 - <b>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2년 06월 30일)</b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**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
- 3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b>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</b> <b>개정사항 반영 : 기준가격</b>	기준가격 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b>대차대조표</b> 상에 계 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 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합니다.	기준가격 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b>재무상태표</b> 상에 계 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 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합니다.
<b>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</b> <b>이투자설명서 갱신: 투자비</b> <b>용,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</b> <b>익률)</b>	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- <b>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2년 06월 30일)</b>
<b>3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</b> <b>업데이트: 운용전문인력</b>	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- <b>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2년 06월 30일)</b>